

세법연구 06-01

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2006. 8

안종석 · 조찬래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5
II. 우리나라의 접대비 관련 세제 현황 및 문제점	6
III. 주요 외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	7
1. 미 국	7
2. 일 본	9
3. 영 국	11
4. 독 일	12
5. 뉴질랜드	14
IV. 각국의 접대비 제도 비교	16
V. 요약 및 시사점	18
참고문헌	20
〈부 록〉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 기본통칙상의 접대비 및 기타 유사비용과의 구별	21

표목차

〈표 Ⅱ-1〉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액	6
〈표 Ⅳ-1〉 각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 비교	17

그림목차

[그림 Ⅲ-1] 접대비와 entertainment expenses 및 gift의 개념	7
---	---

I. 서론

- 우리나라의 접대비 관련 세제는 제도 자체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복잡하여 운영상 많은 문제가 발생함
 - 현행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성격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함
 - 그런데, 세법상 접대비와 기타 유사한 경비인 광고선전비, 회의비, 기부금, 판매장려금 등의 비용과의 구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의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함

- 다음에서는 세법상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접대비와 기타 경비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외국의 제도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모색함

II. 우리나라의 접대비 관련 세제 현황 및 문제점

□ 접대비의 정의 및 범위

-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함

□ 접대비 손금산입액의 계산

- 다음 두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함
 - (1)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한 금액
 - (2)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표 II-1〉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액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2/1,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00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10,000

□ 접대비 관련 지출증빙

-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반드시 적격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음
-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빙서류의 뒷면이나 당해 증빙서류를 첨부한 용지 여백에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부서명 및 성명을 기재한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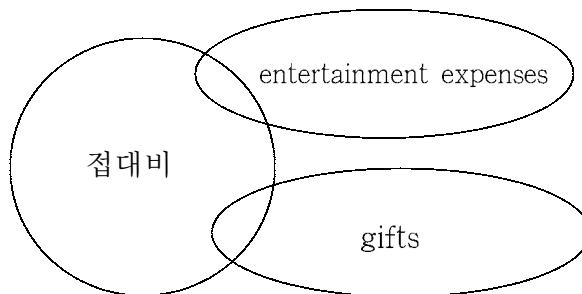
Ⅲ. 주요 외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

1. 미국

□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 gifts)의 개념 및 범위

- 미국은 우리나라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entertainment expenses와 gifts로 나누고 있음
- entertainment expenses는 거래상대방 및 임직원에게 대한 접대, 오락,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한 것을 말하며 gifts는 거래상대방 및 임직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것을 말함
- entertainment expenses와 gifts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접대비 개념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1]과 같음
 - 우리나라의 접대비는 거래상대방에 지출한 비용만을 접대비로 간주하는 데 비해 미국의 entertainment expenses와 gifts는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괄함
 - 미국의 entertainment expenses는 접대, 오락,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것을, gifts는 선물의 제공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접대비는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포괄함

[그림 Ⅲ-1] 접대비와 entertainment expenses 및 gift의 개념



- 미국은 접대비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거래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물품 및 향응의 제공과,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접대비의 손금산입

- entertainment expenses의 경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관련 테스트 또는 사업관련 테스트에 부합한다면, 접대를 위해 정상적이고 필요한 비용 지출액의 50%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gifts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25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음

□ 접대비의 손금산입 요건

○ 직접관련 테스트(directly-related test)

- 접대비가 직접관련 요건을 만족하려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함
 - 사업과 오락이 결합된 경우 주목적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함
 - 납세자가 오락활동에 참석해야 함
 -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소득 또는 기타의 사업상의 혜택을 얻는 것이어야 함
- 일반적으로 사냥이나 낚시, 요트를 즐기며 사업과 오락이 결합될 때에는 사업이 주목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 납세자가 사업이 주목적임을 입증하더라도 오락시설의 사용비용은 공제대상 접대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관련 테스트(associated test)

- 접대비가 사업관련 테스트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접대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관련 논의 직전·후에 발생한 것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흔히 지출되는 비용 중 다음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

기 쉬운 비용임

- 클럽회비: 사업 또는 오락을 위한 클럽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이 규정은 클럽의 운영목적이 회원 및 고객을 위한 오락활동의 수행이든 회원의 고객에게 오락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적용됨
 - 즉, 클럽의 목적과 활동은 회비의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무관함
- 오락시설: 일반적으로 오락시설의 보유 및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접대성 식사비용: 일반적으로 접대성 식사비용이라도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되지 않음
 - 다만, 식사가 사업과 관련한 회의 전·후에 있었고 사업수행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일 경우 공제 가능함
- 사업상 필요한 증정품: 증정품은 1인당 연간 25달러로 공제액이 제한됨. 다만 4달러 이하의 광고성 물품과 전시용 선반 및 기타 판매촉진용 물품은 증정품에서 제외함

2. 일 본

□ 접대비의 개념 및 범위

- 일본에서는 접대비를 교제비라고 칭함
- 교제비란 교제비·접대비·기밀비 및 그 외의 비용으로, 회사가 그 거래처, 구입처 그 외 사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접대, 위안, 선물의 제공, 그 외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을 말함

□ 접대비의 손금산입

- 일본의 세법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의 손금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일부 접대비의 손금성을 인정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액의 계산방법

- 접대비 지출액의 90%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연도가 12개월인 경우를 기준으로 400만엔을 한도로 함

$\text{손금산입접대비} = \text{MIN}[\text{접대비지출액} \times 90\%, 400\text{만엔} \times \text{해당 사업연도의 월수}/12]$

□ 접대비의 요건

○ 접대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3가지 설이 존재함

- 구 2요건설(旧2要件說) :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되는 자 등이어야 하며, 「지출의 목적」이 그러한 자에 대한 접대, 향응의 제공, 선물의 제공(贈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여야 함
- 신 2요건설(新2要件說) :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되는 자 등이어야 하며,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있어서 사업관계자 등의 사이에 친목관계를 긴밀하게 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어야 함
- 3요건설(3要件說) :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관계에 있는 자 등이어야 하며,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와의 사이에 친목관계를 긴밀하게 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어야 하고, 「거래의 형태」가 접대, 향응의 제공, 선물의 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어야 함

○ 최근의 판례(평성 15년(2003) 9월 9일의 동경고등법원의 판결)에서 3요건설을 기준으로 판시한 바 있음

□ 접대비와 다른 경비의 구분

-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 61의 4(1)-1에서부터 64의 4(1)-21까지 구체적인 구별을 제시하고 있음
- 그 중 일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 기부금과 교제비와의 구분 :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금전, 물품 등의 증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기부금인지 접대비인지 개개의 실태에 의

해 판정해야 하지만, 금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교제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함

- (1) 사회사업단체,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 (2) 신사의 제례 등의 기부금
- 매출할인 등과 교제비와의 구분 : 법인이 그 거래처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 또는 매출채권의 회수에 비례하거나 매출액의 일정 금액마다 금전으로 지출하는 매출할인의 비용 및 이러한 기준 외에 거래처의 영업 지역의 특수 사정, 협력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여행 등에 초대하여 회의를 하는 경우의 비용 :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특약점 및 그 외의 판매업자를 여행, 연극관람 등에 초대하여 신제품의 설명, 판매 기술의 연구 등의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에 대하여 그 회의가 회의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에 통상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금액은 교제비 등의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

3. 영국

- 영국의 경우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 계산시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접대비 지출행위에 대한 세제혜택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
 - 다만, 음식, 담배, 상품권 등의 형태로 주지 않고 광고선전비와 유사하게 지출되는 금액은 50파운드(약 9,5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해외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함

4. 독일

□ 접대비의 개념 및 범위

- 접대는 그 동기에 의하여 사적인 이유, 사업상의 이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접대의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 상당액을 말함
- 사적인 동기에 의한 접대는 적절한 생활품위의 유지(Lebensfuehrung)를 위한 비용으로 취급되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 사업 혹은 영업상의 목적으로 접대를 하는 경우 접대비 지출액의 70%만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사직원을 접대하는 경우 그 접대비용은 100% 손금산입될 수 있음

□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처리

- 접대비는 독일소득세법(German Income Tax Code(GITC) sec.4 para.5 no.1:)상의 규정을 따름
- 업무관련 접대비는 만일 그 비용이 세금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것이고 장부상의 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있다면 70%까지 공제 가능
 - 납세자는 접대장소, 접대일시, 참가자, 행사내용, 비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만일 레스토랑에서 접대가 이루어졌다면 행사내용과 참가자, 레스토랑에서 보낸 계산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함
- 접대비는 다른 비용과 별도로 기록되어야 하며(Sec. 4 para. 7 GITC) 그렇지 않은 경우 접대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 접대비의 예시

- 특별 행사와 관련된 접대비
 - 기업행사 비용은 전액 공제 가능한데, 기업행사는 친목 성격의 모임이고 모든 근로자들이 참석할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함
 - 예: 연례수련회, 기업 내의 크리스마스 파티 등
 - 그러나 '비정기적' 파티는 근로자에게 일종의 부가급여로서 과세될 수 있음

- 독일 과세당국은 '비정기적' 파티를 수일에 걸친 행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독일 과세당국은 연간 2개의 파티까지 '정기적'인 행사로 허용함
- 기업행사가 과세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행사에 해당될지라도, 만일 파티 비용이 근로자 1인당 연간 110유로를 초과하면 근로자들의 급여로서 과세할 수 있음
- 업무관련 저녁식사
 - 근로자에게 제공된 음식은 4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관련 저녁식사만 과세 목적상 근로자의 임금으로 봄
-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장려금
 - 사업파트너에게 장려금(incentive)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공제될 수도 있고,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출장비(travelling)와 주택비용은 사업관련 비용으로서 전액 공제됨
 - 40유로를 초과하는 장려금 중 사업관련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장려금은 증여로 처리되나, 다만 적절하고 기록이 있는 접대비용은 70%까지 접대비로서 공제 가능함
- 특별행사
 - 특별행사는 40유로를 초과하면 사업파트너에 대한 증여와 유사하게 과세되고 과세 목적상 공제되지 않음
 - 사용인이 사용자가 개최하는 특별행사에 참석하면 사용인들에 대하여 일종의 부가급여로서 소득세를 부과함
- 기타비용
 -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35유로를 초과하는 증여(Sec.4 para.5 no.1 GITC)는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
 - 근로자를 위한 야유회 또는 직원체육대회 등의 특별행사는 그 중의 한 가지를 1년에 한 번, 직원 1인당 100유로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하여야

하고 만약 1년에 2회 이상 시행되거나, 100유로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간주되며 혜택을 받은 근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여야 함

- 근로자 이외의 자를 위한 주택(Guesthouses: Sec.4 para.5 no.3 GITC) 및 주택 유지보수와 같이 접대와 관련된 설비시설에 사용된 비용은 전액 공제 대상임
- 사냥, 낚시, 요트 및 접대와 관련된 이와 유사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전액 공제대상임(Sec.4 para.5 no.4 GITC)

5. 뉴질랜드

□ 접대비의 개념

- 대상에 관계없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유흥, 오락,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함
- 일정요건을 갖춘 접대비에 대하여는 100%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접대비는 지출금액의 50%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목적으로 지출된 접대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접대비의 손금산입

- 50% 공제대상 접대비: 다음의 4가지 종류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액의 50%를 손금으로 인정함
 - (a) 사업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개최되는 스포츠경기, 문화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비용
 - (b) 별장, 리조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레저 숙박시설
 - (c) 요트와 같은 레저용 운송수단
 - (d) 음식과 주류
- 전액 공제대상 접대비: 다음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 (a) 사업상 목적으로 인한 출장시의 식대
- (b) 회의 및 직원의 교육훈련시 제공하는 음식
- (c) 회사내의 구내식당의 운영비용
- (d) 광고목적으로 지출되는 접대비
- (e) 국외 접대비

IV. 각국의 접대비 제도 비교

□ 접대비의 정의 및 범위 비교

-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의 개념이 우리나라의 접대비의 개념과 상당히 다름
-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지출한 오락, 접대, 금품의 제공을 접대비로 보고 있으나,
- 다른 국가들은 지출상대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지출의 목적이 오락, 향응, 레크리에이션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모두 entertainment expenses에 포함시킴

□ 접대비의 손금인정 여부 비교

- 일부 국가에서는 접대비에 대해 손금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영국),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접대비에 한하여 손금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미국 등)
-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출된 접대비가 공제 가능한 접대비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임

〈표 IV-1〉 각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 비교

	개념 및 범위	손금인정 여부	손금산입 요건	한 도
한 국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등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	지출액 전액 손금인정	별도의 요건 없음	기본금액 ¹⁾ + 수입금액의 일정비율
미 국	거래상대방 및 임직원에 대한 접대, 오락의 제공 및 선물의 증정	entertainment expenses 50%, gift 1인당 25달러 이하	사업과 관련된 지출	한도없음
일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접대, 위안 등의 목적에 위해 지출한 비용 ²⁾	중소기업에 한해 지출액의 90% 손금인정 ³⁾	별도의 규정 없음	연간 400만엔
영 국	-	손금불산입	-	-
독 일	사업상의 이유에 의하여 지출하는 접대 관련 비용	지출액의 70% 손금인정	적절한 지출, 장부상 증빙	한도없음
뉴질랜드	사업상의 목적으로 유흥·오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접대비의 성격에 따라 100% 또는 50%	사업상의 목적에 위해 지출한 비용	한도없음

주: 1) 기본금액은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2) 판례에서 3요건설 적용: (1) 사업 관계에 있는 자에게, (2)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3) 접대, 향응이나 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

3) 중소기업은 자본금 1억엔 이하인 기업

V. 요약 및 시사점

□ 접대비와 기타 유사비용과의 구별문제

- 일본에는 접대비와 기타 비용을 구별하기 위한 정의규정이 있는 데 비해 미국 및 기타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서구의 국가에서는 접대비와 관련한 이슈는 접대비 해당 여부보다 지출된 접대비 지출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체로 사업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함
 - 이들 국가들에서는 접대문화가 발달되지 아니하였으며, 접대의 형태가 일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대비와 기타 비용의 구분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제도의 구성상 공제 가능한 접대비 총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접대비와 유사 비용의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한도가 없는 국가들에서는 그 구분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통칙을 통하여 접대비와 기타 유사한 비용과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두고 있음
 - 한국과 일본에서는 접대비 지출이 많아 공제한도를 두어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접대비에 별도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해 기업의 규모, 성격에 관계없이 400만엔의 정액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접대비 한도액은 그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손금대상이 되는 접대비의 범위가 넓고, 손금산입 한도가 높

아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손금인정 범위가 넓은 편임

- 즉, 접대비 지출에 대한 제재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음

참고문헌

- 손원익,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3.
-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成道秀雄, 『交際費と認定賞与・寄附金』, 日本税務研究セター, 2004.
- IRD, *Entertainment Expenses*, 2004.

〈부록〉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 기본통칙상의 접대비 및 기타 유사비용과의 구별

기부금과 교제비와의 구분

61의4(1)-2 사업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금전, 물품 등의 증여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기부금인지 접대비인지 개개의 실태에 의해 판정해야 하지만 금전의 증여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교제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사회사업단체,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 (2) 신사의 제례 등의 기부금

매출할인 등과 교제비와의 구분

61의4(1)-3 법인이 그 거래처인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 또는 매출채권의 회수에 비례하거나 매출액의 일정금액마다 금전으로 지출하는 매출할인의 비용 및 이러한 기준 외에 거래처의 영업 지역의 특수 사정, 협력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주) 「거래처인 사업자에 대한 금전의 지출. 이라는 것은 거래처인 기업 자체에 대해 금전을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수익에 계상되는 것으로 한다.

매출할인 등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물품을 교부 또는 여행, 연극의 관람 등에 초대하는 비용

61의4(1)-4 법인이 그 거래처에 대하여 물품을 교부하는 경우 또는 거래처를 여행, 연극관람 등에 초대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물품의 교부 또는 여행, 연극관람 등의 초대가 매출할인 등과 같은 기준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의 교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 또는 여행, 연극관람 등에 초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물품을 교

부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이 거래처인 사업자에 있어 재고정리 자산 혹은 고정 자산으로 해서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물품(이하 「사업용 자산」이라고 한다) 또는 그 구입 단가가 소액(대개 3,000엔 이하)인 물품(이하 61의4(1)-5에 대해 「소액 물품」이라고 한다)이며 그 교부의 기준이 61의4(1)-3의 매출할인 등의 산정 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을 교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경품 교환권 첨부 판매 등에 의해 거래처에 대해서 교부하는 경품의 비용

61의4(1)-5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거래처에 대해 이른바 경품 교환권 첨부판매 등에 의해 교부하는 경품에 대해서는 그 경품(교환권에 의해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이 소액 물품이면서 그 종류 및 금액이 해당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경품의 교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주) 경품 교환권 첨부판매와 관련된 경품의 교부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기본 통칙 9-7-3에 의해 미지급 금액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이 교제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경품을 교부한 사업연도에 대해 이 통칙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하며 교제비 등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사업연도의 교제비 등의 금액에 포함하여 손금 불산입액을 계산한다.

매출할인 등의 지불에 대신하는 여행, 연극관람 등의 비용

61의4(1)-6 법인이 그 거래처에 대해서 지출하는 61의 4(1)-3에 해당하는 매출할인 등의 비용에 대하여 일정액에 이를 때까지는 지불을 유예하고 예탁금 등으로 적립해 일정액에 이르렀을 경우에 그 적립금액에 의해 그 거래처를 여행, 연극관람 등에 초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을 때는 그 예탁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은 그 적립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의 소득의 금액(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소득의 금액)의 계산상 손실금의 액수에 산입하지 않고 여행, 연극관람 등에 초대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에 대해 교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한다.

주) 이 경우에, 사정에 의해 그 여행, 연극관람 등에 참가하지 않았던 거래처에 대해 그 예약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도 그 지불한 금액은 교제비 등에 해당한다.

사업자에게 금전 등으로 지출하는 판매장려금 등의 비용

61의4(1)-7 법인이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거래처인 사업자에 대해서 판매장려금 등으로서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의 그 비용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판매장려금 등으로서 교부하는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가 61의 4(1)-15의 것에 해당하는 교제비 등으로서 교부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부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주) 법인이 특약점 등의 종업원(임원 및 사용인을 말한다. 이하 61의 4(1)-18까지 같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임원, 부장·과장 그 외 특정한 종업원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보험료를 부담했을 경우의 그 부담한 금액은 판매장려금 등에 해당한다.

정보 제공료 등과 교제비 등과의 구분

61의4(1)-8 법인이 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거래의 매개, 대리, 알선 등의 역무의 제공(이하 61의 4(1)-8에 대해 「정보 제공 등」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해당 거래와 관련되는 상대방의 종업원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했을 경우에도 그 금품의 교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음의 요건의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그 금품의 교부가 정당한 대가의 지불로 인정될 때는 그 교부에 필요로 한 비용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그 금품의 교부가 약정에 의하는 것일 것
- (2) 제공을 받는 역무의 내용이 해당 계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근거해 실제로 역무의 제공을 받고 있는 것
- (3) 그 교부한 금품의 가액이 그 제공을 받은 역무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주) 이는 그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만 그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과 관련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61조 각호 또는 법 제138조 각호에 규정되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에 대해 상대방에 있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광고선전비와 교제비 등과의 구분

61의4(1)-9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한 선전적 효과를 의도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것은 교제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추첨에 의해 일반소비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 또는 일반소비자를 여행, 연극관람 등에 초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
- (2)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금품교환권첨부판매에 수반해 일반소비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
- (3)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일정한 상품 등을 구입하는 일반소비자에 대해 여행, 연극관람 등에 초대하는 것을 미리 광고 선전해 그 구입한 사람을 여행, 연극관람 등에 초대하는 경우에 그 초대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 (4) 소매업자가 상품을 구입한 일반소비자에 대하여 경품을 교부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 (5) 일반의 공장 견학자 등에게 제품의 시음, 시식을 시키는 비용(이러한 사람에 대한 통상의 다과 등의 접대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6) 거래처 등에 대한 견본품, 테스트품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 (7)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그 취급상품에 관해 특정인의 의뢰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한 일반소비자 또는 소비동향 조사에 협력한 일반소비자에 대해 그 사례로서 금품을 교부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주) 예를 들면 의약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61의 4(1)-9에 대해 같다)의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 화장품의 제조업자에 있어서의 미용업자 또는 이용업자, 건축 재료의 제조업자에 있어서의 목수, 미장이 등의 건축업자, 사료비료 등의 농업용 자재의 제조업자에 있어서의 농가, 기계·공구의 제조업자에 있어서의 철공업자 등은 모두 이러한 제조업자에게 있어서 일반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리후생비와 교제비 등과의 구분

61의4(1)-10 사내의 행사를 전후하여 지출되는 금액 등으로 다음과 같은 것은 교제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창립기념일, 국경일, 신사옥 낙성식 등을 전후해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공여되는 통상의 음식에 지출하는 비용
- (2) 종업원(종업원인 본인을 포함한다) 및 그 친족 등의 경조, 화복을 전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품에 지출하는 비용

재해의 경우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면제 등

61의4(1)-10의2 법인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거래처 등(이하 61의4(1)-10의 3까지 「거래처」라고 한다)에 대해서 그 복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재해를 받은 거래처가 통상의 영업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복구 과정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61의 4(1)-10의 3에 대해 같다) 안에 매출채권계정, 미수청부금, 대출금 그 외 이에 준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손실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리스료, 대출이자, 할부판매와 관련되는 할부금 등으로서 재해 발생 후에 수수하는 것 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실시하는 등 계약으로 정해진 종전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및 재해 발생 후에 새롭게 실시하는 거래에 대해 종전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주) 「거래처 등」에는, 거래처, 구입처, 하청공장, 특약점, 대리점 등 이외에 당사 등을 통한 거래여도 가격 교섭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 경우의 상품 납입처 등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포함된다.

거래처에 대한 재해 위문금 등

61의4(1)-10의3 법인이 재해발생 이전의 거래관계 유지, 회복을 목적으로 재해 발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거래처에 대해서 재해 위문금의 지출 또는 사업용 자산의 공여 또는 역무의 제공을 위해서 필요로 한 비용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주) 1. 자사의 제품 등을 취급하는 소매업자 등에게 재해로 인해 멸실 또는 손괴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교환 또는 무상으로 보전했을 경우도 같은 것으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에는 해당 법인이 제조한 제품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으로 해당 거래처의 사업 용도로 제공되는 것 이외에 해당 거래처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공여되는 것을 포함 한다.
3. 거래처는 그 수령한 재해 위문금 및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의 액수에 산입한다. 다만, 수령 후 즉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공여하는 물품 및 영 제133조에 규정하는 사용가능기간이 1년 미만인 것 및 취득가격이 10만원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사 제품 등의 이재민에 대한 제공

61의4(1)-10의4 법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이재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실시하는 자사제품 등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협동조합 등이 지출하는 재해 위문금 등

61의4(1)-11 협동조합 등이 그 복리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합원 그 외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출하는 재해 위문금 등은 협동조합 등의 성격에 비추어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급여 등과 교제비 등과의 구분

61의4(1)-12 종업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것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교제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상시 지급되는 점심식사 등의 비용
- (2) 자사의 제품, 상품 등을 원가 이하로 종업원에게 판매했을 경우 원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비용
- (3) 기밀비, 접대비, 교제비, 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그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

특약점 등의 영업사원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61의4(1)-13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자기 또는 그 특약점 등에 전속하는 영업사원(그 보수에 대해 소득세법 제20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위해서 지출하는 다음의 비용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영업사원이 취급하는 그 취급수량 또는 취급금액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에 의해 교부하는 금품의 비용
- (2) 영업사원의 복지를 위해 행해지는 운동회, 연예회, 여행 등을 위해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
- (3) 영업사원 및 그 친족 등의 경조, 화복을 전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금품의 비용

주) (1)에 정하는 금품의 교부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특약점 등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출하는 보장금품

61의4(1)-14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자기의 제품 등만을 취급하는 특약점 등의 종업원에 대해서 그 사람의 판매와 관련되는 해당 제품 등의 취급수량 또는 취급금액에 따라 미리 약정한 것보다 더 교부하는 금품의 비용에 대해서는 61의 4(1)-13의 것(1)에 규정된 비용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교제비 등에 포함되는 비용의 예시

61의4(1)-15 다음과 같은 비용은 교제비 등의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 회사의 몇 주년 기념 또는 사옥신축기념에 있어서의 연회비, 교통비 및 기념품대 및 선박의 신규건조 또는 토목건축 등에 있어서의 진수식, 기공식, 낙성식 등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러한 비용이 주로61의 4(1)-10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의 비용을 제외한다)

주) 진수식, 기공식, 낙성식 등의 식전의 제사를 위해서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하청공장, 특약점, 대리점 등이 되기 위한 운동비 등의 비용

주) 이러한 거래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해서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의 비용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거래처, 구입처 등의 경조, 화복을 전후하여 지출하는 금품 등의 비용(61의 4(1)-10의 2로부터 61의 4(1)-11까지, 61의 4(1)-13의(3) 및 61의 4(1)-18의 것(1)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 (4) 거래처, 구입처 등의 사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제조업자 또는 그 도매업자와 직접 관계가 없는 그 제조업자의 제품 또는 그 도매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등을 여행, 연극관람 등에 초대하는 비용(도매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로부터 받아들이는 (5)의 부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5)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그 제품 또는 상품의 도매업자에 대해 해당 도매업자가 소매업자 등을 여행, 연극관람 등에 초대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을 경우의 그 부담액
- (6) 이른바 총회대책 등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총회참가자 등에 대해서 회비, 찬조금, 기부금, 광고료, 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과 관련되는 것
- (7) 건설업자 등이 고층빌딩, 맨션 등의 건설을 할 때 주변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해당 주민 또는 그 관계자를 여행, 연극관람 등에 초대하거나 이러한 사람에게 주식을 제공했을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위한 비용
 주) 주변의 주민이 받는 일조 방해, 풍해, 전파장애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해당 주민에게 교부하는 금품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8) 슈퍼마켓업, 백화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상가 등에 진출하는 경우에 주변 상점 등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출하는 운동비 등(영업보상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비용
 주) 그 진출에 관련해 지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로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 및 영 제14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9) 거래처, 구입처 등의 종업원에 대해서 거래의 사례 등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비용(61의 4(1)-14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 (10) 건설업자 등이 공사의 입찰 등을 위해 지출하는 이른바 담합금 또는 이것과 비슷한 비용
- (11) (1)-(10)의 규정 외에 거래처, 구입처 등 회사 외의 사람에 대한 접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61의 4(1)-1의 것 (1)부터 (5)까지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용

여행 등에 초대해 회의를 실시했을 경우의 회의비용

61의4(1)-16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특약점 및 그 외의 판매업자를 여행, 연극관람 등에 초대하여 신제품의 설명, 판매 기술의 연구 등의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에 대하여 그 회의가 회의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금액은 교제비 등의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현지 안내 등에 필요로 하는 비용

61의4(1)-17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판매를 위해서 직접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부동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의 판매를 위해 일반의 고객을 현지에 안내하는 경우의 교통비, 식사 또는 숙박을 위해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
- (2) 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체여행의 알선을 하는 것에 해당되고 여행지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는 그 단체의 책임자 등의 특정한 사람을 사전에 그 여행 예정지에 안내하는 경우의 교통비, 식사 또는 숙박을 위해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여행지의 여관업자 등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 (3) 신제품, 계절상품 등의 전시회 등에 거래처를 초대하는 경우의 교통비, 식사 또는 숙박을 위해서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
- (4) 자사 제품 또는 취급상품에 관한 상품 지식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

등에 해당 제품 또는 상품의 제조 공장 등을 견학시키는 경우의 교통비, 식사 또는 숙박을 위해서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

하청 기업의 종업원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61의4(1)-18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업무위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 등으로서 교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법인의 공장, 공사현장 등에 근무하고 있는 하청기업의 종업원이 그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하청기업의 종업원에 대하여 자기의 종업원으로 준하여 위문금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2) 법인의 공장, 공사 현장 등에 대해 무사고 등의 기록의 달성 정도에 따라 그 공장, 공사 현장 등에 경상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하청기업의 종업원에 대해서 자기 종업원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표창 금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3) 법인이 자기 업무의 특정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청받고 있는 기업의 종업원으로 전속적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예를 들면, 검침원, 수금원 등)의 복지를 위해서 행해지는 운동회, 연예회, 여행 등을 위해서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그 부담액
- (4) 법인이 자기의 종업원과 동등의 사정에 있는 전속 하청업체의 종업원 또는 그 친족 등의 경조, 화복을 전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용

상관행으로 교부하는 모형을 위한 비용

61의4(1)-19 건물, 플랜트, 선박 등의 건설청부 등을 한 건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발주자에 대해서 상관행으로 해당 건설 청부 등의 목적물의 모형을 교부하기 위해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은 교제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세법연구 06-01

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2006년 8월 28일 인쇄

2006년 8월 31일 발행

저 자 안중석·조찬래

발행인 최 용 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6

ISBN 89-8191-323-4

* 잘못 만들어진 책을 바꾸어 드립니다.